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의 정비〉

■ 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11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3 |
| 2. 개정안의 입법취지 .....     | 7 |
| 3. 주요 검토사항 .....       |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락 · 박민규 · 황정아 · 윤건영 · 김영환 · 김 윤  
김성환 · 채현일 · 백승아 · 양부남 · 문금주 · 신정훈  
정성호 · 박지혜 · 정진욱 · 최민희 · 정준호 · 전진숙  
박희승 · 이기현 · 박홍배 · 김태선 · 황명선 · 이원택  
의원(24인)

2. 제 안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 의안번호 : 23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정보위원회의 특례규정처럼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전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54조의2제2항 신설).

##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202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회의 비공개 요건·절차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회의안건에 국가정보원법상 공개가 제한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4조의2제1항).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에 대한 특례규정인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정보위원회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한 회의 공개 원칙이 적용되므로,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②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국가정보원법」 제8조<sup>1)</sup>가 규정한 사항(국가안전보장의 목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된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을 포함한 안건,

---

1)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법」 제16조<sup>2)</sup>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첨부서류, 예산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산 집행 현황, 지출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안건,

③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sup>3)</sup>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회의안건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④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동의(動議) 및 의결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54조의2제2항).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 2)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원장은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국가정보원법」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위원이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動議)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해당 회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음.

[표-1]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결정 요건 및 절차>         |                                                                                                                                                                                                                                                                                                                                                                                                                                                                                                                                                                                  |
| 종전(위헌결정전)<br>(근거: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비공개</li> <li>• 예외: 공개 (공청회 및 인사청문회는 의결로 공개 결정)</li> </ul>                                                                                                                                                                                                                                                                                                                                                                                                                                                                           |
| 현행(위헌결정후)<br>(근거: 국회법 제71조·제7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공개</li> <li>• 예외: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li> <li>②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li> </ul> </li> </ul>                                                                                                                                                                                                                                                                                                                                                               |
| 개정안<br>(근거: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공개</li> <li>• 예외: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위원회의 의결</b>이 있거나 <b>위원장이 간사와 협의</b>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의안건에 「국가정보원법」 제8조가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 결정된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이 포함”된 경우</li> <li>② 회의안건에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첨부서류, 예산집행 현황, 지출증빙서류 등)이 포함된 경우</li> <li>③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회의안건에 대해 <b>비공개 요청한 경우</b></li> <li>④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ul> </li> </ul> |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                                                                                                                                                                                                                                                                                                                                                                                                                                                                                                                                                                                  |
| 종전(위헌결정전)                        | 없음                                                                                                                                                                                                                                                                                                                                                                                                                                                                                                                                                                               |
| 현행(위헌결정후)<br>(근거: 국회법 제71조·제89조) | ※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회의 비공개결정이 별도 이루어지 않는 구조                                                                                                                                                                                                                                                                                                                                                                                                                                                                                                                      |
| 개정안<br>(근거: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       | <b>별도의 동의(動議) 및 의결 절차 규정 신설</b><br>(동의자 1인 및 찬성자 1인 이상으로 회의 공개 여부 의결 요구 및 위원회 의결)                                                                                                                                                                                                                                                                                                                                                                                                                                                                                                |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br><u>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u>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br><u>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신 설>                                                                                                               | 1. 「국가정보원법」 제8조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안건                                                                                                           |
| <신 설>                                                                                                               | 2.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건                                                                                                 |
| <신 설>                                                                                                               | 3.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신 설>                                                                                                               | 4. 그 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 설>                                                                                                               |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動議)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해당 회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 ④ (생략)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

## 2. 개정안의 입법취지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 회의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비공개회의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sup>4)</sup>.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sup>5)</sup>.

한편, 회의 공개에 대해 「국회법」 제71조 및 제75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6)</sup>

반면, 종전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서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음.

이는 국가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동 조항은 지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 6.) 시 정보위원회를 별도의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면서 함께 마련한 것임.

---

4)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363

6)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① 헌법 제50조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며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②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 대해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헌법 제50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며 위헌결정<sup>7)</sup>을 내렸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한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며, 회의 비공개 시에는 위원회 의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sup>8)</sup>.

이에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의 원천적 비공개는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정보위원회의 특성상 국가 기밀의 보호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보원법」과 연계하여 회의 비공개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 및 회의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

7)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

8) 2024년 7월 29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한 후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음.

### 3. 주요 검토사항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적용 범위에 ‘소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결정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안 제54조의2제1항은 “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보위원회의 소위원회<sup>9)</sup>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 내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sup>10)</sup>

둘째, 개정안은 비공개 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 ‘「국가정보원법」 제16조<sup>11)</sup>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9) 정보위원회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있음.

10) 참고로, 현행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소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원장은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됨.

현재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sup>12)</sup>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기획·조정하는 법무부·경찰청·통일부·국방부 등 다른 관계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정보 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고 있으므로,<sup>13)14)</sup>

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컨대, 2023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위원회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음.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124131] 2024년도 예산안**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14)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외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가. 국외정보·북한정보·안보위해정보·심리정보(외국인 또는 북한 구성원의 감정·견해·태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개정안에 따른 비공개 규정의 취지 및 정보위의 실제 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셋째,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로서 동의(動議)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위원이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動議)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해당 회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상 일반적인 동의는 본회의·위원회에서의 의결을 의무화하지 않은 반면에<sup>15)</sup>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여부의 의결을 요구하는 동의’는 정보위원회에서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동의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경우가 아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 위원 2인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공개 여부를 재의결하도록 규율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6. 행정안전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5)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제89조 및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의결 요구를 위한 동의(動議)가 가능하나,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는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비공개 결정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로서 동의(動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본회의에서의 비공개 동의(動議) 절차를 규정한 현행법 제75조를 참고하여 해당 동의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75조제2항은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장의 제의나 국회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한 토론을 할 경우 공개 회의의 토론에서 의사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의의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sup>16)</sup>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위한 동의(動議) 절차에서도 관련 토론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회의의 공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의 내용이 언급되어 사실상 회의의 주요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6)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366

다섯째,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54조의2제2항’이 ‘제54조의2제3항’으로 변경되므로, 이에 맞추어 ‘제54조의2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제155조제4호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3] 개정안의 체계·자구 관련 수정의견

| 현행                                                                                                                                                       | 개정안                                         | 수정의견                             |
|----------------------------------------------------------------------------------------------------------------------------------------------------------|---------------------------------------------|----------------------------------|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③ (현행법 제54조의2 제2항과 같음)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③ (개정안과 같음) |
|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제155조(징계) (현행과 같음)                          | 제155조(징계) (현행과 같음)               |
|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                                             | 4. 제54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

여섯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정보위원회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예산회계) ① ~ ⑥ (생 략)<br>⑦ <u>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 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 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16조(예산회계) ① ~ ⑥ (현행과 같음)<br>⑦ 「 <u>국회법</u> 」 제54조의2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비공개로 하는 <u>경우</u> -----<br>-----. |
|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

|              |
|--------------|
| 문 의 처        |
| 02)6788-5016 |